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재위험시설 등의 설치 제한〉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76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강대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재위험시설 등의 설치 제한	2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의 설치 제한(안 제9조제32호 신설)	5
2. “물류시설”의 설치 제한(안 제9조제33호 신설)	7
3.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소”의 설치 제한(안 제9조제34호 신설) ..	11
4. “가연성 및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등”의 설치 제한(안 제9조 제35호 신설)	12
 【참고자료】	
1. 시설의 교통유발계수	14
2. 특수가연물	16
3.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17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재정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11.

다. 회 부 일 : 2024.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법률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버스 충전소의 경우 소음과 분진, 대형 차량 진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재위험시설 등의 설치 제한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 및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제35호까지 에----- ----- ----- ----- -----.
1. ~ 31. (생략)	1. ~ 31. (현행과 같음)
<신설>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현행	개정안
<신설>	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신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신설>	3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소
<신설>	35.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 및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제2조제1호1)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교육환경”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2)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³⁾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

해당 구역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의 시설(「교육환경법」 제9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⁴⁾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의 범위 안에서 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담배자동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의 행위 및 시설(「교육환경법」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로 나누어지고 있음.

2) 【참고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내용
절대보호 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 지역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금지 (제9조제1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
상대보호 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전기버스 충전소의 경우 소음과 분진, 대형 차량 진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및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의 설치 제한(안 제9조제32호 신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⁵⁾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전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⁶⁾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장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려는 것임.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충전 중 발생한 경우는 201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⁷⁾,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로 인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점⁸⁾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주차장법」 제6조⁹⁾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내 주차장에 이미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현재¹⁰⁾ 전기차충전기 총 6,999대가 학교¹¹⁾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6)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청 보도자료(최근 3년간 차량화재 증가추세...본격 나들이철, 주의 당부) 참조

8) 교육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학교나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일반용과 버스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9)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1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4년 7월 19일 기준

1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설구분상 학교로 분류되어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이에 해당함.

교육부는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로 인하여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대형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성 증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행 「주차장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기버스의 충전사업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행 「교육환경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에 버스차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버스차고지에 위치한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전기버스 운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물류시설”의 설치 제한(안 제9조제33호 신설)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²⁾에 따른 물류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경우 대형 차량의 진입이 동반되고,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점¹³⁾을 고려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12월 물류창고의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는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 문화 개선, 화재 안전 사각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둘째,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등의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¹⁴⁾, 학교 주변 어린이

13)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물류창고 화재로 287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총 8,74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14)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

보호구역 설정으로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에 따르면¹⁵⁾, 100만 이상 도시규모 기준 창고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대형마트 5.46, 영화관 3.55, 일반음식점 2.56, 학원 1.42, 도서관 0.9와 다르게 비교적 낮은 수치인 0.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물류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할 정도의 교통 혼잡이 발생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⁶⁾에 따른 물류시설에는 우편취급소와 택배대리점 등 소규모 물류시설까지 포함되는바, 관련 시설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15) 【참고자료 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참조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¹⁷⁾.

3.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저장소”의 설치 제한(안 제9조제34호 신설)

개정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¹⁸⁾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¹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²⁰⁾의 저장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려는 것임.

특수가연물의 경우 발화(發火)되기 쉬운 물질들로 누전(漏電), 흡연 등 화기(火器)의 취급, 용접·용단(鎔斷)²¹⁾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들로부터 쉽게 화재가 발생될 수 있고, 화재 발생시 확대가 빠른 것으

17) 교육부는 소규모 물류시설까지 모두 포함하면 수범대상이 광범위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물류시설 설치를 제한하면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어려워 전자상거래 확산, 빠른 배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곤란해 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토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어 차량 통행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물류 업계에서도 학교 앞 학생의 보행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의 동선을 조정하거나, 운행 시간을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체적인 학생 보행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물류시설을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할 경우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20) 【참고자료 2】 “특수가연물” 참조

21) 퓨즈, 전선 등이 대전류에 의해서 녹아 끊어지는 것을 말함.

로 보여지므로, 특수가연물의 저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²²⁾을 규정하여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설치 시 화재의 예방조치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하여 일정 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나, 특수가연물 저장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음.

개정안은 특수가연물 저장소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장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화재예방강화지구”²³⁾에는 학교 주변 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이 명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참고자료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참조

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아닌 학교 인근에 특수가연물 저장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상충되거나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가연성 및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등”의 설치 제한(안 제9조제35호 신설)

개정안은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 및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2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7.~10. (생략)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려는 것임.

가연성(可燃性)이란 불에 잘 탈 수 있거나 타기 쉬운 성질²⁴⁾로 가연성 자재가 절반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물 및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등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교육부는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가연성 자체의 비중이 높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것은 다른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준으로서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87

24) 표준국어대사전

참고자료 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이상 ~100만 미만	30만이상 ~50만 미만	10만이상 ~30만 미만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0	1.46	1.32	1.06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1.16	1.00	0.78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0.82	0.74	0.74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1.04	0.96	0.96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5.46	4.48	2.67	2.67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44	1.16	1.02	1.02
9	문화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2.38	1.94	1.12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3.43	2.39	1.49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3.55	2.38	1.94	1.12
10	전시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	3.55	2.42	2.16	2.03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이상 ~100만 미만	30만이상 ~50만 미만	10만이상 ~30만 미만
	시설		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 장, 박람회장				
		나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 시설			0.47	0.43	0.31	0.24
12	창고 시설		창고, 하역장	0.61	0.50	0.37	0.30
13	운수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나	철도시설	4.13	3.76	3.11	2.46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 관련 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1.18	1.04	1.04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 통신 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나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다	데이터센터	0.82	0.68	0.62	0.62
16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 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 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2.68	2.14	1.71
17	그 밖의 시설물			1.20	1.00	0.82	0.71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참고자료 2

특수가연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벚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 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벚짚류”란 마른 벚짚·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뭇잎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
 -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고무류·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넙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참고자료 3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특수가연물	
화기엄금	
품 명	합성수지류
최대저장수량 (배수)	000톤(00배)
단위부피당 질량 (단위체적당 질량)	000kg/m³
관리책임자 (직 책)	홍길동 팀장
연락처	02-000-0000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참고자료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021. 9. 24.>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